



◆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(2)

【 소비자 보호 강화 관련사항 】

■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내용 확인 절차 마련(제9조 개정)

- ☞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에게 법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
- ☞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로 절차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



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추가 부담비용 예시 추가(제20조 개정)

- ☞ 재화 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예시로 교환 · 반품비용을 추가

■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(제30조제2항 신설)

- ☞ 위법행위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와 소명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

■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신설(제33조제2항 신설)

- ☞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
- ☞ 대금 환급 거절 및 지연의 경우 환급 조치, 재화 등의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 조치하도록 함

■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목록 수정 및 추가(제35조 개정)

- ☞ 분쟁조정기구 목록 중 한국소비자원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

(끝)